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2월 16일  
복지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2월 2일, 고영찬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2월 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  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4년 2월 16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2021년 7월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으로 시정명령, 이행강제금, 과태료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 권한이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올바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문화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상위법령에 근거한 전용주차구역 설치·운영 내용 추가 및 조문 명칭 변경(안 제6조)
- 2)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시정명령, 이행강제금, 과태료 규정 반영(안 제8조~제10조 신설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#### 1) 개정 이유

- 본 개정안은 2021년 7월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으로 시정명령, 이행강제금, 과태료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 권한이 구청장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음.

#### 2) 주요 내용

- 가) 상위법령에 근거한 전용주차구역 설치·운영 내용 추가 및 조문 명칭 변경(안 제6조)
  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및 서울시 조례를 준용하여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
- 나)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시정명령, 이행강제금, 과태료 규정 반영(안 제8조~제10조 신설)
  - 법 제11조의4(시정명령), 제11조의5에 따라 구청장의 단속권한을 신설 규정함

#### 3) 검토 의견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의 근거를 규정하고 시설 설치 이행에 따른 구청장의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